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6

2020년 2월 26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권순선 의원 외 12명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순선 의원)

1. 제안이유

○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감은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제12조).

마.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권순선 의원 외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06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국제교류 현황과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글로컬 교류·협력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의[1] 일환으로 '해외 한글도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 62p 참고.

서 기증'을 비롯한 '교원초청정보화연수', '서울-북경 청소년 체육교류대회' 등 매년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현재까지 7개국 8개 도시의 교육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

[표] 2017~2020년 국제교류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연도	예산	대상국 (도시)	협력처(기관명)
1	교육혁신과	PC지원	2017	9,441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시청
			2018	9,477		
			2019	11,712		
			2020	11,500		
			2017	6,80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타슈켄트시교육청
			2018	339		
			2019	6,718		
			2020	8,300		
		교원초청정보화연수	2017	59,638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시청
			2018	76,202		
			2019	66,887		
			2020	73,900		
			2017	52,71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타슈켄트시교육청
			2018	53,507		
			2019	59,654		
			2020	52,500		
		단기파견현장연수	2017	5,10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타슈켄트시교육청
		현지 추수지도	2018	9,816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시청
			2019	9,69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타슈켄트시청
			2020	10,000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시청
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교육청-하얼빈시 교육국 업무협약	2019	1,000	중국 (하얼빈)	하얼빈시교육국
3	중등교육과	오디세일학교 해외교류	2019	32,000	덴마크 (노르아베)	덴마트 애트터스콜레
4	참여협력담당관	아세안 글로컬 역량강화 아카데미	2019	75,000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교육원(NIE)
			2020	75,000	싱가포르	
		아재지역학교리더십아카데미	2017	70,000	호주 (멜버른, 시드니)	빅토이아주 교육청 및 교육리더십연수원

2) 서울특별시교육청 MOU체결 기관 교류 현황은 [붙임] 참고.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연도	예산	대상국 (도시)	협력처(기관명)
			2018	70,000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주 교육부 및 교육리더십연수원
		해외 서울교육 봉사단	2019	65,000	동티모르 (딜리, 아일레우)	동티모르 교육부 및 대사관
			2020	65,000	러시아	미정
		서울교육 글로컬 나눔 사업	2020	50,790	러시아	미정
		해외 한글도서 기증사업	2017	34,000	태국, 베트남	각국 한국교육원 및 대사관
			2018	27,000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각국 한국교육원 및 대사관
				40,000	우크라이나, 몽골	
			2019	40,000	러시아 (모스크바, 로스토프)	로스토프나도누한국 교육원 및 러시아대사관
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서울-북경 청소년 체육 교류대회	2017	31,950	중국 (북경)	북경시교육위원회
			2018	31,950		
			2019	46,950		
			2020	32,000		

○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간접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3)등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종류와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 예산의 지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국제교류 업무의 체계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문 체계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총칙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조정, 대상 기관의 선정,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5까지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학교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안 제7조와 제8조)

○ 안 제7조는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각급 학교들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별로 수행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들 중 매년 우수사례를 선별하여 「국제교류 우수기관 우수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외국어 교육과 해외 현장교

육을 확대해 글로벌 인재로양성과 해외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5개년 계획’(2018.10.24.)을[4] 추진하면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다국적 언어(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2019.3.20.)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31일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로 25개교(26개 사업단) 12개 국가에서 약 380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2019년 졸업생 기준으로 국제화사업 등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6개교 총 49명이 11개 국가에 취업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5]

○ 이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해외취업 등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 발굴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7조와 제8조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각급 학교별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성과를 조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급 학교 단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바, 이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집행부 의견의 철회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

4) △특성화고 학생 다국적언어(외국어) 교육 확대, △서울시 자치구(구청)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확대, △서울 특성화고 우수 직업교육 모델의 해외 전파, △국제화 전문기관과 MOU 체결 등 10개 사업임.

5) 2020년 특성화고국제화교육지원 예산은 15억 2천 4백만원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74교와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6교의 학생들에게 해외직업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맞춤형국제화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임.

결을 받고 있으나, 동 법 제39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관련 기관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그러나 동 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교류협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외에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관련 기관의 경우 외국의 교육 행정기관 외에도 외국의 학교 및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 하다는 점에서 모든 국제교류협력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견을 철회하였습니다(참여협력담당관-1750, 2020.2.17.).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교육 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 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이하 “국제교류협력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
5. 선진기술의 습득 또는 전수,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각 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6.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7. 제1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교육감은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